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접속 국가별 비율 표시 등〉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86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접속 국가별 비율 표시 등(안 제44조의11 및 제 44조의12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1. 12.

다. 회 부 일 : 2026. 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론장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국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행위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 인터넷주소를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별 비율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용자가 정보의 유통 환경과 배경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 신설).

Ⅲ. 검토의견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접속 국가별 비율 표시 등(안 제44조의 11 및 제44조의12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게시판 등에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이하 “IP 주소”)를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별 비율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안 제44조의11제1항)
- 조치의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44조의12제1항)
 - 동일 또는 유사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등 동일한 접속 환경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대량으로 정보를 게재하는 행위(제1호)
 -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작업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보를 게재하는 행위(제2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3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4조의11(이용자의 접속 국가별 비율 표시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게시판 등에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이하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별 비율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기간,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44조의12(정보 조작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① 조치의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현행	개정안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1. 동일 또는 유사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등 동일한 접속 환경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대량으로 정보를 게재하는 행위</u> <u>2.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작업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보를 게재하는 행위</u> <u>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u> <u>② 조치의무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 이행실적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다. 검토사항

- 2023년 10월 한 국내 포털 사이트 스포츠 응원 페이지에서 우리나라가 아닌 상대편 국가에 대한 응원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한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해외 IP로 접속하는 이용자가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형성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 한편, 지난 1월 9일에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기사 댓글에 작성자의 국적을 표시하는 제도에 찬성하는 의견이 6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어¹⁾ 사회적으로도 온라인 이용자의 국적에 대한 표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조치의무사업자로 하여금 IP 주소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접속국가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통계를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해당 게시판 등의 국가별 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에 따른 조치가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역행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타국의 이용자가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거나 반대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 개정안에 따라 표시되는 이용자의 IP 주소 기준 접속장소는 실제 이용자의 국적과 명확히 일치한다고 보

1) 한국리서치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중앙일보·경향신문 의뢰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1일 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6268>)

기 어려워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임.

- 또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여 우회 접속하는 경우 이용자가 임의로 표기되는 국가명을 조정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여 여론을 조성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의무사업자가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를 통한 우회 접속 여부도 확인하여 통계에 반영하도록 수정할 수도 있으나 현재 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 여부 판단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둘째, 개정안에 따른 조치가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헌법 제15조²⁾에 따른 직업의 자유는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포함하며,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함(96헌가18).
-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자로서는 이용자의 이용 및 접속 장소 기준 국가를 파악하고 통계를 내는 데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음.
- 셋째, 실제 게시판 등의 이용자 국적별 비율을 파악하고 VPN 등 우회접속

2)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으로 인한 통계 오류를 바로잡아 공개하더라도 그 결과가 특정 외국 세력의 조직적 여론 조작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게시자가 우회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IP 정보에 표시되는 국가가 실제 접속국가와 상이할 수 있는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등’ 접속국가 비율을 공개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 표현의 자유 제약 및 사회 갈등 조장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국가별 비율 표시에 대하여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하였고,

대량정보 게재, 단순·반복 게시 등을 통해 여론을 왜곡하거나 편향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자체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방미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 이상징후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이행실적 보고에 대해 수용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VPN, 프록시 서버, Tor 네트워크 등을 사용할 경우 실제 접속국가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실제 의도를 가진 조직적 세력은 IP 우회를 통해 감시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서 결과적으로 이용자에게 왜곡된 통계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고,

조치의무사업자로 지정되면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하

여 게시판과 관련 서비스에 공개 UI, 통계 산출 및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하므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과도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IP 주소)를 기준으로 국가 비율을 산출하는 방식은 VPN·프록시 등을 통한 우회가 용이하여 실제 조직적 조작 세력 식별에는 효과적이지 않고,

안 제44조의12제1항에서 사용되는 ‘대량’, ‘단순·반복’, ‘의심되는 경우’ 등의 표현은 의미가 불명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수준까지 모니터링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제재 회피를 위한 과도한 선제적 차단을 유도할 위험이 있어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온라인 댓글 등에 대하여 이용·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을 표시하고, 우회 접속 여부도 명기하도록 하는 다수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³⁾과 관련 청원(청원번호 제2200146호, 온라인 댓글 작성 시 국적 표기 의무화에 관한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8

3) 의안번호 제2202377호(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450호(나경원의의원 대표발의)